

『구미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안 자 : 구 미 시 장

2. 제안이유

- 청소년문화의 집이 신축·이전됨에 따라 「구미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」에 그 내용을 포함시켜 청소년수련시설의 포괄적 관리·운영을 가능하게 하고, 휴관일 및 이용시간 등을 명시하여 구미시 청소년수련시설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·운영을 도모코자 함.

3. 주요내용

- 「구미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」에 구미시청소년문화의 집 운영사항 포함(명칭 및 업무·기능에 추가)
 - ※ 기존 「구미시청소년문화의집 운영 및 관리 조례」 폐지
- 청소년수련시설 시설 사용료 및 프로그램 이용료 구분(별표2)
- 이용시간 및 휴관일 명시 (안 제3조의2, 제3조의3)

4. 참고사항

- 「지방자치법」, 「청소년기본법」, 「청소년활동진흥법」

5. 검토의견

○ 본 조례안은

- 청소년문화의 집이 신축·이전됨에 따라 「구미시청소년문화의집 운영 및 관리 조례」를 폐지하고 「구미시 청소년수련 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」에 그 내용을 포함시켜 청소년수련시설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·운영을 도모코자 개정하는 조례안임

○ 주요 내용은

- 「구미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」에 구미시청소년문화의 집의 명칭 및 업무, 기능에 운영사항을 추가하고
- 청소년수련시설별 시설 사용료 및 프로그램 이용료와 이용시간 휴관일을 구분 명시하였음

○ 검토결과

- 본 조례안은 구미시 청소년수련시설의 포괄적 관리와 운영을 통해 건전하고 미래지향적인 청소년 육성을 도모코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에 저촉사항 없음